

의안번호	2218369
의 퇴 인	조계원 의원
회 답 일	2026. 5. 15.
추계번호	26A22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6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조(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8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2년)을 법률에 규정하고(안 제8조제3항 후단 신설),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 현행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산업통상부 국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지원 현황(산업통상부 국비 기준)

(단위: 백만원)

지역	지정기간	지정기간 중 지원 예산	
		2025	2026
전남 여수시	2025.5.1.~2027.4.30	1,250	1,500
경북 포항시	2025.8.28.~2027.8.27	1,250	1,500
충남 당진시	2025.8.28.~2027.8.27	1,250	1,500
전남 광양시	2025.11.20.~2027.11.19	—	1,500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